

대전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0나108743 판결 [공사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0나10874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20가단10799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강

담당변호사 김태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호동

변론종결 2022. 4. 12.

판결선고 2022. 6. 14.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20가단107992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20,14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1) (이하 'B'라 한다)에 대한 회생채권은 120,14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B를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128,64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피고의 항소는 그 대상이 소멸된 상태이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C에서 셀프세차장(이하 '이 사건 셀프세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B는 세차장비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10. 26. B와 사이에, 이 사건 셀프세차장에 세차장비 및 기본적인 프레임, 베이스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1,066,249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착수예정일 2018. 11. 26.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B에게 2018. 10. 26. 계약금 19,000,000원, 2018. 12. 24. 중도금 13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B가 세차장비등을 입고 및 설치하지 않자 B에게 이행을 독촉하였고, 이에 B는 원고에게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아야만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2019. 4. 1. B와 사이에, B가 2019. 4. 15. 장비를 하차하는 조건으로(B가 제시한 2안에 따른 것으로, B가 2019. 4. 15.부터 2019. 4. 19.까지 5일간 세차장비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가 2019. 4. 1. 잔금 39,066,249원을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4. 1. B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잔금 39,066,249원을 지급하였다.

라. B는 2019. 4. 15.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장비를 하차하지 않았고, 세차장비설치 등 이후의 공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9. 5. 9. B에게 세차장비설치 등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상의 예정공사기간인 5일보다 긴 7일의 공사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9. 5. 10. B에 도달하였다.

마. B의 이 사건 공사 중단시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는 72,152,966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는 122,213,283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이에 따른 기성고 비율은 37.12% [= 72,152,966원 / (72,152,966원 + 122,213,283원)]로서, 기성고 비율에 의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70,923,791원 (= 191,066,249원 × 37.12%, 원 미만 버림)이다.

바. 한편 B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0. 10. 20. 대전지방법원 2020회합5046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0. 12. 24.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원고는 2021. 2. 3.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21. 3. 19. 이의한 후 2021. 4. 8. 이 법원에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B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행의 최고 및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9. 5. 9.자 내용증명이 2019. 5. 10. B에게 도달한 후 원고가 이행을 최고한 상당한 기간인 7일이 도과함으로써 2019. 5. 18.경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 공사한 부분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이 70,923,79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91,066,249원에서 위 기성 공사대금 70,923,791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20,142,458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9. 4. 15.경 피고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고, 원고의 계약 해제는 원고의 변심 사유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해제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20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에서 계약금 19,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9. 4. 15.경 공사에 착수하려고 하였고 이를 원고가 거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상회복금 120,142,4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된 다음 날인 2019.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원고는,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확정을 구하나,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익이 있는 경우 이익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로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20,142,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하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순영, 판사 윤이진, 판사 안영화

1) 원고의 2022. 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피고에 대한 채권’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제1심판결 선고 후 B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가 B를 소송수계한 점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B에 대한 채권’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행하기로 한다.